

#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대안)

의안 번호	17904
----------	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6. 3.

제안자 :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

## 1. 대안의 제안경위

순번	의안명	의안번호	대표발의자 (제출자)	발의일 (제출일)	심사경과
1	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	2211204	박용갑의원	2025.7.2.	제429회국회(정기회) 제2차 전체회의 (2025. 9. 25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기업 소위원회 회부
2		2213500	오세희의원	2025.10.10.	제433회국회(임시회) 제1차 전체회의 (2026. 3. 9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 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기업소 위원회 회부
3		2214380	김한규의원	2025.11.19.	제433회국회(임시회) 제1차 전체회의 (2026. 3. 9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 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기업소 위원회 회부

가. 제433회국회(임시회) 제1차 중소기업소위원회(2026. 3. 11.)에  
서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,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  
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·조정  
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나. 제433회국회(임시회)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(2026.  
3. 12.)에서 중소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  
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며, 중소벤처

처기업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.

## 2. 대안의 제안이유

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빈 점포 활용 촉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, 고객안내시설, 문화·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, 지역특산품의 홍보 또는 전시판매를 위한 장소 등 공공성에 중점을 둔 용도로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, 빈 점포 활용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.

또한, 전통시장 구역변경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경미한 구역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바, 전통시장의 인정 및 구역변경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## 3. 대안의 주요내용

가.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소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의 신청을 받아 일정 구역을 전통시장으로 인정하거나 전통시장의 구역 등 인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구역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그 요건과 절차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 신설).

나. 전통시장 등의 상인 등이 빈 점포를 판매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17조제1항제5

호의2 신설).

##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시장의 인정 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장소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의 신청을 받아 일정 구역을 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다. 시장의 구역 등 인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인정의 요건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구역변경 신청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요건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제17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2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판매시설

가. 시장등에서 창업하려는 사람

나.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

다. 제65조에 따른 상인회

라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빈 점포 활용 및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지원할 수 있다.

1. ~ 5. (생략)

<신설>

6. · 7. (생략)

② · ③ (생략)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5의2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

자가 운영하는 판매시설

가. 시장등에서 창업하려는  
사람

나.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 
경영하는 상인

다. 제65조에 따른 상인회

라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 
하는 사람으로서 빈 점포  
활용 및 상권활성화에 기  
여할 수 있는 자

6. · 7. (현행과 같음)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